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발간등록번호 31-9700484-001731-14
ISSN 2672-0280
2020. 4. 13. 제16호
NABO FOCUS

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

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**심혜정 과장, 백경엽·태정림 분석관**

문제의 제기

● **지난 3월 17일 「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」 국회 통과 후, 4월 8일 정부의 추가 조세지원 대책(안)이 발표됨**

- (3월 17일)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,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,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등 2조원 규모
- (4월 8일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추가 확대, 선결제·선구매 세액공제 신설,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,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 등 12.4조원 규모

[표 1] **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**

(단위: 억 원)

구분	주요 내용	세수효과
旣 대책 (3.17)	소규모 개인사업자(연매출 8천만원 이하) VAT 부담 경감	('20)△2,929 ('20~'21)△5,858
	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(연매출 3,000만원 → 4,800만원)	('20)△437
	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(6월까지, 감면한도 100만원)	('20)△5,233
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(3~6월 사용분)	('21)△3,449
	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0.03~0.05%p 상향('20년 한시)	('21)△1,886
	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법인세 등 감면(소기업 60%, 중기업 30%)	('21)△3,400
	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(인하액의 50%)	추정곤란
추가 대책 (4.8)	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%로 상향	추정곤란
	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·선구매시 세액공제(1%) 신설	추정곤란
	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	추정곤란
	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(특별재난지역 등은 신고도 유예)	–[1]

주 1) 납부유예 규모는 12.4조원(정부 추계)으로 예상되나, 금년 세수에는 영향 없음

자료: 기획재정부, 국회예산정책처

● **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실시 중. 다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**

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개관

● **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(pandemic)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**

- 기업과 가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, 각종 손실/비용인정 범위 확대,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 피해구제 추진

-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소비세 면제(tax holiday) 등 과감한 지원정책 적용

[표 2] **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개관**

구분	지원 목표	주요 내용
법인세 (55개국)	기업 유동성 개선	당해 영업손실 소급공제 적용(loss-carryback)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감면 법인세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, 체납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및 면제 이자비용 등 비용인정 범위 확대
	고용지원	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(SSCs) 납부유예 및 감면 병가 등 유급휴가자 급여지불액 환급형 세액공제 고용 인센티브 지급 횟수 확대(연 2회 → 매월)
	투자촉진	가속감가상각 허용, R&D 투자비용 조기 세액공제
소득세 (39개국)	가계 유동성 개선	소득세 환급(rebate, refundable tax credit)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유예 및 면제, 연체처분 중지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 및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
소비세 (61개국)	유동성 개선	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, 가산세 감면 및 면제
	소비촉진	특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소비세 면제 또는 세율인하
	재난 대응	코로나19 물품(소독액/마스크 등) 세율 인하 및 면제
재산세 (15개국)	유동성 개선	재산세 납부 유예 및 감면 특정 업종(호텔/컨벤션/크루즈) 재산세 환급(rebate)

자료: OECD, "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-19 crisis"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● **(정책목표) 코로나19 조세지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'기업 유동성 확보'**

- 조세지원 정책목표는 기업 유동성 확보 > 가계 유동성 지원 > 고용지원 > 소비촉진 순

● **(조세지원 방법) 지원 방법은 조세채권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납부유예 및 가산세 면제 등 적극적 세정지원이 보편적**

- 조세지원 방법은 납부유예 등 > 특정 품목 등 세율인하 및 면제 > 세금환급 등 현금이전 순

[그림 1] **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개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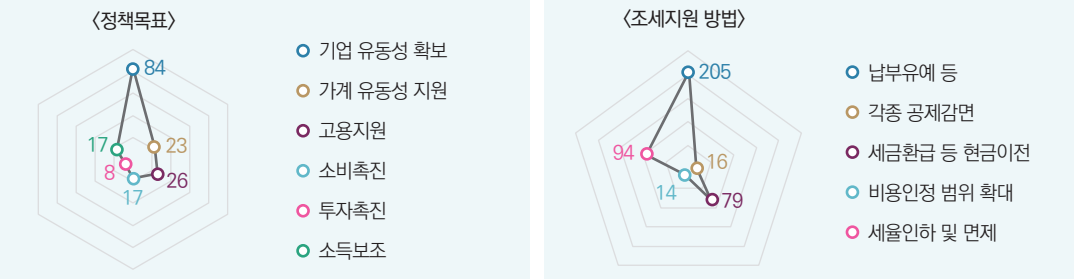

주: 동 수치는 국가별로 취해진 조세지원 조치의 개수를 의미하며, 국가별 재정지출, 조세지원 등 재정 분류체계 및 지원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

자료: OEC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

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특징

● 각국의 조세지원 대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강도 및 지원 유형에 차이

- 미국은 조세지원의 규모와 지원 건수 측면에서 지원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
- 그 외 그리스, 호주, 스위스, 노르웨이, 영국의 조세지원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, 한국 또한 최근 4월 8일 지원대책(안)을 포함할 경우 조세지원 강도는 평균을 소폭 상회

[그림 2] **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조세지원의 강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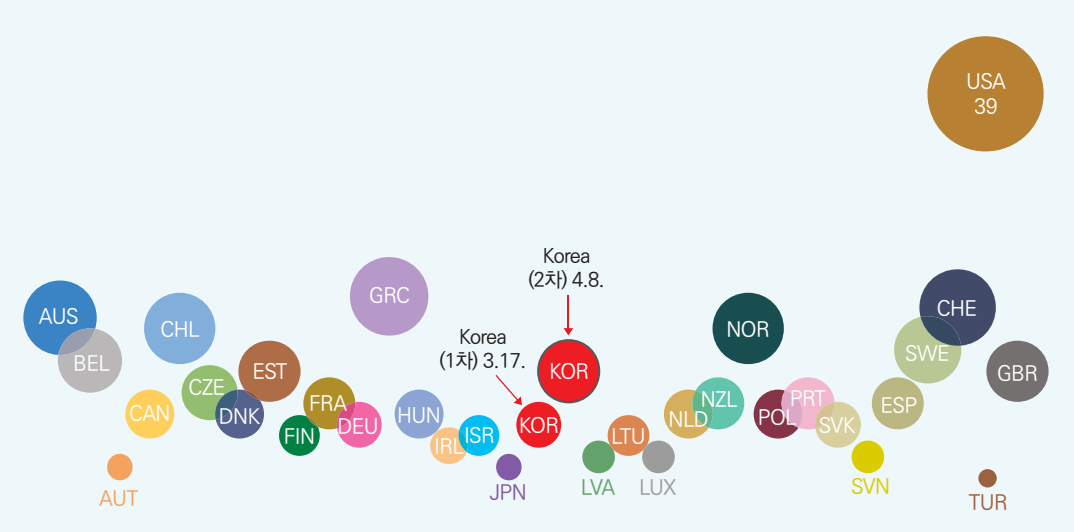

주: OECD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취해진 조세지원 조치의 개수기준으로 지원의 강도를 측정
자료: OEC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

●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조세지원 강도에 일부 영향

- 조세지원의 강도와 국가채무 비율 간에 음(-)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, 이는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의 강도가 높음을 의미
- 다만 미국은 재정여력이 높지 않음에도 강도 높은 조세지원책을 마련한 예외적인 국가
  - 미국의 지원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보편화되지 못한 민간의료 시스템,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보호 수준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취약성이 높은점, 지원 분류 체계의 국가별 차이, 정치상황, 기축통화 보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

[그림 3] **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의 강도와 재정건전성 간의 관계**

(단위: GDP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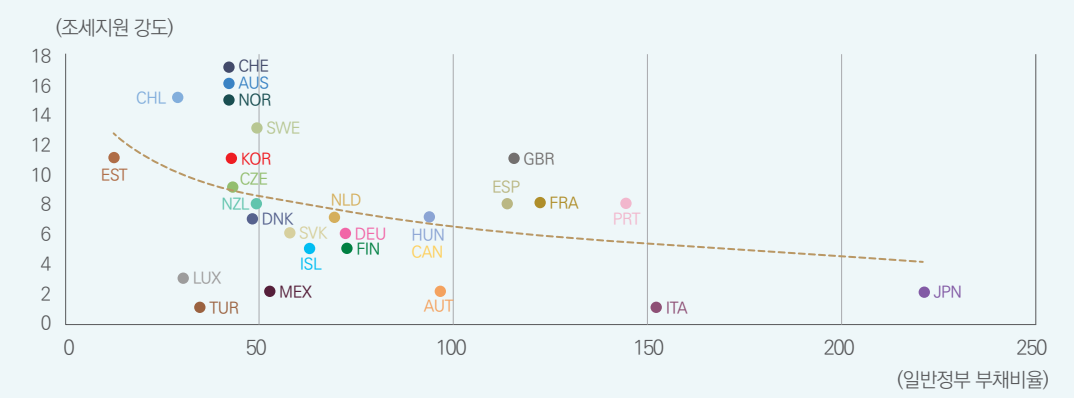

주: OECD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취해진 조세지원 조치의 개수기준으로 지원의 강도를 측정. 미국, 그리스는 예외적인 국가로 제외함
자료: OEC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

정책적 시사점

● **많은 국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,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세지원의 강도 및 유형에 차이**

- 국가별 차이에는 각국의 정치 상황, 기축통화 보유 여부, 재정상태, 사회보장시스템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

● **4월 8일 정부 대책(안)을 포함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은 조치 건수 기준으로 볼 때 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나, 보완할 여지 존재**

-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세정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도한 4월 8일 정부안은 비상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
- 다만,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한 세금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등 적극적 세정지원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
  - 현재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관세 분야의 세정지원이 실시되는 반면, 그 외 직접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으로 한정
  - 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,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한정
- 항공·운송 및 관광서비스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재정·금융·조세지원을 망라한 포괄적인 대책 수립
  - 주요국은 항공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경우 금융지원 뿐 아니라 소비세 면제(tax holiday) 등 다각적인 조세지원 적용

● **고용·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(contingency plan)을 마련하여 경기복원력을 제고**

- 자본·노동·상품 등 임모빌리티(immobillity) 충격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및 실업 증가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 마련
- 국가 주력 산업의 투자촉진 및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정책 강구

● **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,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 필요**

-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 발생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 중요
- 잠재성장률 둔화 등 세입여건 약화에 대응하여 재정지출 증가속도 제어 없이는 지속적인 재정악화 불가피, 중기 재정계획상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모색
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담당 |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문의 | 02-788-4647

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